
사 망 보 험 금 유 동 화 특 약
약관

◆ 목

차 ◆

사망보험금유동화특약 약관	3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3
제1조【목적】	3
제2조【용어의 정의】	3
제2관 사망보험금 유동화	4
제3조【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및 취소】	4
제4조【사망보험금 유동화 중지 및 재신청】	5
제5조【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의 지급사유】	5
제6조【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6
제7조【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 지급 절차】	6
제8조【특약의 보험기간 중 주계약 계약내용의 변경】	7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7
제9조【특약의 보험기간】	7
제10조【특약의 소멸】	7
제4관 기타사항	8
제11조【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8
<별표1>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 지급기준표	9

사망보험금유동화특약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별도로 정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나.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로 합니다.

다.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라.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제4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3. 사망보험금 유동화 관련 용어

- 가. 사망보험금 유동화(이하 “유동화”라 합니다):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매년 일정금액을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에서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 나. 재신청: 유동화가 중지되거나 종료된 이후 계약자가 남아있는 보험가입금액에 대하여 다시 유동화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총액(다만, 특약의 보험료는 제외합니다)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또는 인출이 발생한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6조(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변경됩니다.
- 라. 유동화 금액의 총액: 유동화 신청시 계산한 유동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마. 재신청 유동화 금액의 총액: 유동화 재신청시 계산한 유동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재신청 이전의 유동화를 통해 수령한 금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 바.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주계약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사.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2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3조【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및 취소】

- ① 이 특약은 이미 체결된 주계약이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적용하며, 계약자는 유동화 신청일에 주계약이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동화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계약
 2. 유동화 신청시점에 주계약 사망보험금(기타유지보너스, 증액 보험금, 체증형 보험금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신청시점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지급되는 주계약 사망보험금 기준)이 9억원 이하인 계약
 3.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4. 유동화 신청시점의 피보험자 나이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5. 보험계약대출 잔액(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포함)이 없는 월 적립식 계약^{*}
- ^{*} 최초납입일로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은 제외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라 유동화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신청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3. 기타 계약자가 유동화 신청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③ 계약자는 제1회 유동화 금액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동화 금액을 회사에 환입하고 유동화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동화 신청일로부터 30일(다만, 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는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한 경우 유동화 신청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신청 철회에 관한 기타 사항은 주계약 약관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 ④ 회사는 주계약의 기명 사망보험금 보험수익자에게 유동화 신청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조【사망보험금 유동화 중지 및 재신청】

- ① 계약자는 유동화 기간 중 언제든지 유동화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유동화를 종료하고, 유동화 금액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6조(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항에 따라 매월 유동화 금액을 지급하던 중 계약자가 유동화 중지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해당 연도의 연단위로 유동화 된 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일시에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계약자는 유동화 중지 신청일 또는 종료 이후 유동화를 재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3조(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및 취소)를 준용합니다. 이 때, 제6조(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유동화 비율 및 유동화 기간 등의 변경이 가능하며, 제5조(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의 지급사유)에 따라 유동화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5조【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유동화 신청일로부터 최종 유동화 지급 해당일까지 매년 유동화 지급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약정한 유동화 금액(<별표1>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유동화 지급 해당일

제7조(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 지급 절차) 제1항에 따른 최초 유동화 금액을 지급한 날 및 유동화 기간 이내의 매년 '최초 유동화 금액을 지급한 날'과 동일한 월, 일(다만, 해당 월에 동일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을 말합니다.

다만,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7조(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 지급 절차) 제1항에 따른 최초 유동화 금액을 지급한 날 및 유동화 기간 이내의 매월 '최초 유동화 금액을 지급한 날'과 동일한 일(다만 해당 월에 동일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말합니다.

제6조【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계약자는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90% 이내(유동화를 재신청하는 경우 최초 신청시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90%에서 해당 재신청 이전까지 유동화로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에서 유동화 대상금액과 유동화 기간(연 단위)을 최소 2년부터 최대 “주계약에서 정하는 보험료 산출시 사용된 종국연령까지의 잔여기간” 이내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국연령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시 보장기간 종료시점의 기준이 되는 피보험자의 최종 나이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유동화 대상금액 및 유동화 기간을 선택하는 경우, ‘유동화 금액의 총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유동화 재신청을 하는 경우, ‘재신청 유동화 금액의 총액’은 유동화 재신청 시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변경 예시

(1) 보험가입금액 감액 이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감액 직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 후 보험가입금액}}{\text{감액 전 보험가입금액}}$$

(2) 인출 이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인출 직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 후 계약자적립액}}{\text{인출 전 계약자적립액}}$$

※ ‘감액 또는 인출 직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 또는 인출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④ 회사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유동화 대상금액을 유동화 기간으로 나누어 매년 감액할 금액을 정하고 유동화 기간 동안 매년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에서 감액하며,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유동화 금액으로 하여 이 특약의 매년 유동화 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매년 감액할 금액’의 예시

$$\text{매년 감액할 금액} = \frac{\text{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금액}}{\text{사망보험금 유동화 기간}}$$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유동화 금액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⑥ 계약자는 유동화 신청일 이후 유동화 기간 중에는 유동화 비율 및 유동화 기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7조【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 지급 절차】

- ① 회사는 제3조(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및 취소)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유동화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유동화 금액을 지급할 때 유동화 금액 지급 해당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라 계산합니다.

제8조【특약의 보험기간 중 주계약 계약내용의 변경】

- ① 유동화 대상 금액에 해당하는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매년 유동화 지급 해당일에 감액됩니다.
- ② 계약자는 유동화 기간 동안 계약자를 변경할 수 없으며, 주계약 보험료의 추가 납입,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주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이 변경되는 제도 및 옵션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종 유동화 지급 해당일까지 유동화 지급이 완료되거나 제4조(사망보험금 유동화 중지 및 재신청) 제1항에 따라 유동화 지급이 중지된 이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주계약의 약관을 준용합니다.
- ③ 계약자는 유동화 기간 동안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장래 유동화 종료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한도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9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유동화 신청일부터 유동화 종료일과 이 특약의 소멸일 중에 빠른 날까지로 합니다. 재신청 시에는 재신청일부터 재신청 이후 유동화 종료일과 이 특약의 소멸일 중에 빠른 날까지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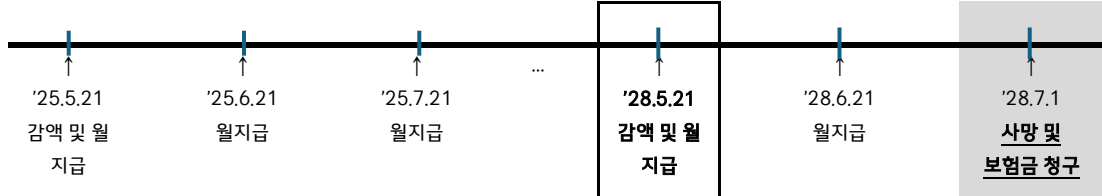
제10조【특약의 소멸】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주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유동화도 종료되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② 주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사망보험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에 지급된 유동화 금액이 있는 경우 회사가 지급할 사망보험금에서 해당 유동화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동화 금액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던 중 이 특약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연도의 연단위로 유동화 된 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일시에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유동화 금액을 지급받던 중 주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예시]

[예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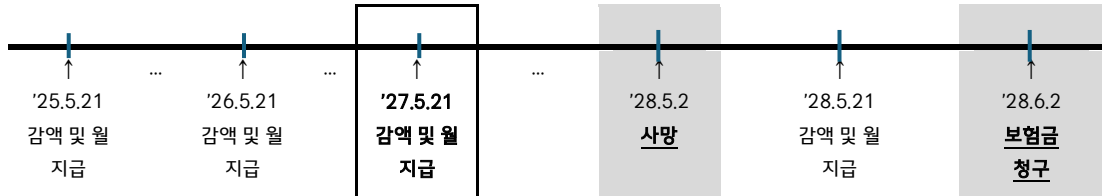
2025년 5월 21일 유동화 신청(20년)하여 매월 21일마다 유동화 금액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다가 2028년 7월 1일 사망하고, 사망보험금 당일 청구



⇒ 2028년 5월 21일 기준으로 감액하여 남은 사망보험금과 미지급된 유동화 금액(10개월분)을 합산하여 계산한 일시금을 지급하고 소멸

[예시 2]

2025년 5월 21일 유동화 신청(20년)하여 매월 21일마다 유동화 금액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다가 2028년 5월 2일 사망하고 2028년 6월 2일에 사망보험금 청구



⇒ 2027년 5월 21일 기준으로 감액하고 남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소멸

(다만, 2028년 5월 21일 유동화 금액이 지급되었다면 지급된 유동화 금액(1개월분)을 차감)

제4관 기타사항

제11조【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 지급기준표

■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 (약관 제5조)

지급 사유	피보험자가 매년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급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 금액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매년 감액할 금액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매년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급 해당일에 지급

- (주) 1.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에 해당하는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매년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급 해당일에 감액됩니다.
2.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은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해당 월에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급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을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급 해당일로 합니다.